

제346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1월24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2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2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2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2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11
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12
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12
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14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16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6
1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17

1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7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17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18
1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19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1
1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1
19.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57인 발의)	22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2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4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소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소관 법률안 중에서 일부 쟁점이 있는 법률안들이라고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지난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되 심사 대상 법률안 중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 또는 병합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은 일괄 상정하여 병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정부 측에서는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4분)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하태경·이원욱·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1차 심의를 하였던 안건들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1차 회의 심의결과와 당시 합의에 이른 수준 그리고 오늘 논의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은 DPF 금전납부 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님하고 강병원 의원님 안은 부과율하고 상한액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정부에서 안을 보완해서 마련해 오면 그것과 함께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회의 때 요구했던 몇 가지 자료들 아마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같이 보시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첫 페이지 보시면 부과율과 상한액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인증 받지 않거나 또는 인증 받은 것하고 다르게 하는 경우 외에 추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를 추가해서 제2호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의 기

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2항을 수정했습니다.

그 대통령령의 예시를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몇 % 이것으로 그대로 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현재 매출액의 몇 %의 반을 하도록, 현재는 3%의 반이니까 약 1.5%를 부과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3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그대로 100% 다 부과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인 새로 신설된 2호에 대해서도 100%, 현재로서는 매출액의 3%가 되겠지요. 그리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와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증가하는 경우는 반, 현재로서는 매출액의 3%의 반이니까 1.5% 그리고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4분의 1로 하는 것으로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는 안을 보고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님.

○河泰慶 위원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폭스바겐은 15종이더라고요. 지난번 15종에 상한액 10억이었을 때 141억 과징금이고 이것을 만약에 100억으로 올리면 1410억이 되는 것이고 1000억으로 상한액을 올리면 과징금이 1조 5000억이 됩니다. 상한액을 1000억으로, 폭스바겐의 경우에.

○이상돈 위원 그것이 아니라 퍼센티지를 가지고……

○河泰慶 위원 상한액까지 퍼센티지가 찼다면 그러니까 1종당 1000억이 되기 때문에 15종이면 1조 5000억이 됩니다. 제 질문은 이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많을 수도 있지요. 1조 5000억을 만약에 걸었다고 하면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것은 없습니다. 일반 세입……

○河泰慶 위원 이 돈이 아무 데나 쓰이네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정부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환특에 들어와서 환특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河泰慶 위원 그래서 미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미국은 147억이 부과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환율로 보면 한 15조, 만약에 1조 5000억이라면 미국은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미국은 사법적 이것이 판결로 되고 147억이 쓰인 것 중에 100억은 소비자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47억은……

○소위원장 한정애 47조?

○河泰慶 위원 100억 불.

○소위원장 한정애 예.

○河泰慶 위원 100억 불은 개별 소비자한테 나누어 줬고 47억 불은 환경개선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R&D 이런 데 용도제한을 해서 사법부가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려했던 것을 다시 재확인하게 된 것인데 많이 때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그런데 이것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1조 5000억이나 되는 재량이 주어진다 하고 하면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1000억 상한 없이 하면 행정부로 용도제한 없는 몇 조의 돈이 들어오면 당장 업체들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환경부 직원들은 퇴임 후에 직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인맥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수부 세월호 할 때 관피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조장한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취지는 지난번에도 똑같이 공감을 했는데 용도가 제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의 권한을 과다하게 늘려서 우리나라가 관피아 세상으로 가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부작용이 너무나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미국식으로 사법적 판결로 가서 용도도 그 취지에 맞게 사법부에서 정해 주는 이러한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고 부작용, 후유증이 적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당연히 환경부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재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에는 부합하겠지만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이상돈 위원** 지금 하태경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는 상당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과징금제도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과징금제도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만 그것을 다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이 제일 많은 것이 공정위원회 이것이기 때문에……

○**河泰慶 위원** 제일 많은 것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까?

○**이상돈 위원** 공정위가 제일 종류가 많아요.

○**河泰慶 위원** 아니, 총액으로 따지면, 비율이 아니고.

○**이상돈 위원** 총액도 많이 나와요.

○**소위원장 한정애** 총액이 없지요, 거기는.

○**河泰慶 위원** 없는데, 이런 자동차 산업이 워낙 크니까……

○**이상돈 위원** 아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 많이 해요.

○**河泰慶 위원** 공정위도 많이 있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린 과징금에 대해서는 큰 기업들이 100% 승복하는 경우가 없고 다 소송 갑니다. 소송 가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많이 이겨요.

○**河泰慶 위원** 기업이 이긴다는 것이지요?

○**이상돈 위원** 기업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징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대기법에서 그것을 다룰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과징금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미국법에 말하는 그것은 시빌 화인(Civil Fine)이라고 그래서 민사 벌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규정 위임해서 이렇게 하고 법원이 판결을 하는데요. 그것이 소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회사 측하고 정부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것은 몇 년 후에 타협하게 되면 줄어요. 그것은 미국대로의 제도이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기법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河泰慶 위원** 의견 더 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리고 정부 측에 저희가 1차 회의 때 각 다른 부처나 해당 상임위의 과정

금 관련한 제도들 자료를 모아 주십사 했는데, 있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4쪽에 있네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지금 그것을 보시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이 있고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에 대한 과징금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법률이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공정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과징금에 대한 부과 법률의 예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지난번 논의할 때 100분의 5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가 합의점을 이루지 않았나요?

○**소위원장 한정애** 예, 그 정도 어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임이자 위원** 상한선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상한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를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제가 오늘 논의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까지는 동의하고요, 두 가지 문제 논의해 주십시오.

하나는 걷은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용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지, 배출가스 문제로 됐으면 어쨌든 이 공동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징벌인데 그 용도로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그 문제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징벌인데 피해자가 국민과 소비자인데 그 피해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한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00억이 시행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과기간을 한 3년 정도 두고 그다음에 그러면 상한을 없앨 것이냐 상한을 또 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한액을 1000억으로 올리면 1조 5000억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 급진적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고, 100억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이 지금 오셨

기 때문에. 10억 한도일 경우에 141억 과징금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100억 기준을 적용하면 15종이기 때문에 1410억이 되고, 1000억 상한이 되면 1조 4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한 500억 정도로 올리더라도 절반이면 7500억이 됩니다, 폭스바겐 사례의 경우에.

그래서 3년 이후에 한 500억 정도로 일단 상한을 올리고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제가 절충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부과된 과징금의 용도 제한인데 지금 과징금은 환특회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의 과징금의 경우에도 일반 정부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이나 특별회계 세입이나 세입으로 하고 지출 용도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용도를 제한하거나 하려면 전체적인 정부 내에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환특회계 세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환특은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습니다.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환특에서 지출하는, 그야말로 환경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돈보다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돈이 훨씬 더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특정한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들어오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돈이 줄어들 뿐이지 특별히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특별한 용도로 제한하는 것은……

○소위원장 한정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환특회계가 쓰여지는 게 결국은 대기오염 개선, 수질오염 개선, 즉 다시 말해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일반회계와 같이 동일하게 전혀 환경과 관련 없는 곳에 쓰여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좀, 아까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를 하게 되면 행정청에 너무 재량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요

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만 사례가 특징이 되어 버리면 부과금액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자율재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河泰慶 위원 3%, 5%가 상한이잖아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상한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행령에 0.1이나 1 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의 경우에는 바로 3%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 3의 경우에는 0.5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부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재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제안하신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 일단은 많은 논의 속에서 전체 법안소위에 의견들이 모아져서 하태경 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5%에서 하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정부 측 설명을 통해서 의문점들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100억 3년 경과하고 보고 500억 상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하태경 간사께서 인용하셨던 그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15개 차종입니다. 그래서 총매출액이 4조 9000억이었습니다. 5조가 됩니다.

5조가 됐는데 기존의 100분의 3 했을 때는 부과액이 141억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아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비용만 하더라도 809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만 809억이었는데 아마 이 과징금만으로는 턱도 없는 것이었을 거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라도 폭스바겐이 17조를 가지고서 협상을 하는 거였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민법에 만약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게 도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10%가 됐든 20%가 됐든 50%가 됐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지고서 1000%도 할 수 있는 거고, 2000%도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몇 조를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 봤다고 해서 받아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법적인 게 미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하기는 워낙 긴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이 모아진 것이 5%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5%에서 상한이 없을 때는 2500억 정도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물레이션하면 2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809억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거랑 비교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배출가스……

○**河泰慶** 위원 잠깐만, 상한이 없을 때 얼마?

○**강병원** 위원 2483억입니다.

○**송옥주** 위원 그거 5페이지에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 환경부에서 준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15종 다 해서 말입니까?

○**강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5조를 벌었는데 국민을 속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그런 허탈감이라든지 분노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로 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이 내는 과징금은 25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

○**강병원** 위원 그리고 이것을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에는 또 이게 가중치가 0.5를 하게끔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00억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적용하더라도 1250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19대에서도 이 폭스바겐 사태에 우리가 뒤늦게 대응하느라 급하게 해서 100억 상한 했지만 결국 이거조차도 많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 부분은 우리 환노위에서 수정할 부분 빨리 수정을 해서, 다국적 기업들이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국가의 법적·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악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액수라는 것이 또 과하지 않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에 임의설정으

로 141억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과를 설명하겠습니다.

15개 차종입니다. 그래서 15개 차종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현재 두 가지 사례만 있지 않습니까, 부과율 적용하는 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인증을 받은 것과 다르게 제작한 거기 때문에 1.5%를 적용을 한 겁니다.

0.5를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억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사실은 0.5가 아니고 지금 새로 이율을 집어넣어 가지고 고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대로 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500억이 아니라 5000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5%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5000억이지요.

○**강병원** 위원 보시지요. 매출액이 5조니까 5%를 하면 $5 \times 5 = 25$ 해서 2500억이지요. 그렇지요? 5×5 하면 25입니다.

○**임이자** 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

○**강병원** 위원 잠깐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

○**임이자** 위원 그거 맞아, 2500억이 맞고.

○**소위원장 한정애** 이게 산수인지 수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종당 매출액, 그렇지요? 15개 종이면 어떤 종은 1000억 원어치가 팔린 게 있고, 어떤 종은 500억 원어치가 팔린 게 있으면 차종당 매출에 따라서 최대 5%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15개종이 다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5%를 넘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이게 맞습니다, 2483억이.

○**강병원** 위원 맞습니다.

○**河泰慶** 위원 오히려 다 수렴이 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소위원장 한정애**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상한이 없이 이렇게……

○**河泰慶** 위원 상한액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억으로 잡으면 아우디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게 5%도 넘어서……

○**소위원장 한정애** 더 내려가지요.

○**河泰慶** 위원 아니지, 500억으로 잡으면 15종이니까 7500억까지……

○**소위원장 한정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河泰慶** 위원 한 종당 500억이니까.

○**소위원장 한정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제 얘기 끝내고 여기에 논리적인

문제는 말씀해 주세요.

15종 곱하기 500억이면 상한액이 7500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5%로 했을 때 이 아래에서 2500억이 다 부과될 수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단서조항이 뒤에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출액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 과징금의 합은 그 총합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5%의 총합이 2500억이니까 이 총합은 7500억이라니까요, 500억으로 했을 때 상한을.

○소위원장 한정애 그것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河泰慶 위원 7500억이기 때문에 초과 안 하기 때문에 강 위원님이 의도한 그 액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제 말씀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러는데 100억으로 있던 것을 갑자기 풀어 버리는 것과 100억으로 있던 것을 500억으로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안정되어 보이는, 상대적으로. 그런데 효과는 같다고 하면 풀어 버리는 것보다 500억으로 두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훨씬 안정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강병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면 차종당 과징금을 매출액의 5%로 매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 차종당 매기는 금액이 100억이 아니라 500억이란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河泰慶 위원 상한이 그렇지요.

○강병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을 수 있는 돈은 더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게 15개 차종을 다 해서 5조였는데,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강병원 위원 그래서 각각의 15개 종별로 매출액의 5%를 상한을 매기는데 거기에 100억이 제한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법을 달리 제안하신 거지요. 그 상한을 500억으로 해 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7500억이 전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안 될 수도 있지요.

○강병원 위원 안 될 수도 있지요.

○河泰慶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작게 된다는 거

지요, 실제 보면. 그러니까 상한을 풀자는 것보다는 이게 법리적 감정으로 볼 때 훨씬 안정감이 있다는 거지요.

○이용득 위원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상한을 그대로 뒀도 문제가 없는 거지, 그거보다 넘지는 않으니까.

○河泰慶 위원 아니요, 100억을 두면 상한이 15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억을 건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상한제 폐지하지요.

○河泰慶 위원 강병원 위원 취지와는 다르다는 거지요, 상한선을 100억으로 두면.

○이용득 위원 풀어도 상관없는 거고 단지 국민들이 안정적 법률 저거라는 거잖아.

○강병원 위원 큰 문제가 없으시면 푸는 것이 훨씬 더……

○河泰慶 위원 그건 너무 급진적이라 안 돼요. 법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지요. 법철학에도…… 효과가 똑같으면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나요?

○이용득 위원 오히려 국민들은 상한을 푸는 게 더 안정적이지.

○소위원장 한정애 자, 위원님들……

○환경부차관 이정섭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차종이 15개 차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당 상한을 풀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조를 팔더라도 차종이 15개 차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맥시멈을, 너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을 거다, 1000억으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한액을 풀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차들은 실제로 한 차종당 많이 팔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나타 같은 케이스는 1년에 2조 5000억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종이 바뀌지를 않고 3, 4년 이렇게 팔리게 되면 이 부과하는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상한 제한을 안 하면.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베스트 셀링 카가 된 차들은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상한선은 좀 규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이……

○소위원장 한정애 아니,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나타나 아반떼나 많이 팔리는 차종은 소나타 단일 종으로 인증을 받으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거기도 인증을 다시 받는데 보통은 한 2~3년씩……
○소위원장 한정애 각 모델별로 다 인증을 거의 받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모델별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베스트 카이기에 때문에 인증을 다시 받는 경우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2년, 3년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은 정보를 왜곡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면 안 됩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이게 지금 소나타 특정 종입니다. 인증번호가 하나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2조 5000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나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증을 여러 개 받는데 그중에 한 인증번호가 이렇다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거기 보시면 참고자료 해서 밑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차량이 1년~6년,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급격하게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2, 3년, 4, 5년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나타가 2조 5000억이라면 그러면 2년만 해도 5조가 되고 3년 하면 7조 5000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한선이 없다고 그러면 그 금액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소위원장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지금 100분의 5에 대해서 전부다 합의를 이뤘고요. 예를 들어서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억 상한선을 둔다고 할 경우에는 한 종당 1조의 매출이 있을 때 뽕뽕이 됩니다. 그렇지요? 1조일 때 같아지는 겁니다. 한 종 매출이 1조일 때 같아지는 겁니다, 5%나 500억이나.
같은데, 아까 지금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막자는 저거고,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자는 측면인 거고 환경부에서 지금 하신 말씀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데 대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태경 위원 말씀대로 가게 되면 500억 한 다음에 사실 한 종당 1조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매출이 한 종당…… 그래서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상한선 뒤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좀 절충안을 찾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 우리 한 위원님, 정부가 준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 2013년부터 16년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죽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차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대우버스, 기아 그다음에 한국지엠, 쌍용…… 뭐 쌍용 정도, 기아, 대우버스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쌍용…… 나머지는 다 대부분 외국계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습게 아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외국계 자동차 회사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규제를 했을 때 오히려 국내 자동차 업체가 더 득을 볼 수 있다라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 회사가 대부분 속임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 법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시장이 자꾸 커지는 것을 보고 신차 판매를 앞당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을 막 무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차 판매를 해 가지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 가니까 오히려 이 법의 허점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저께 말씀하셨던, 분분하게 좀 있었지만 결국은 이 법을 우리가 허술하게 하면 할수록 결국 국내 자동차 업체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종별로 그렇게 500억을 상한을 하게 되면 어떤 차는 시장에 던져봤는데 별로 잘 안 팔릴 수가 있고 어떤 차는 베스트 셀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렸다면 이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들은 충당할 방법이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매출

액으로 가는 것이 전체 규율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글썄,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5는 합의를 했잖아요, 벌써.

○강병원 위원 예.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나머지 상한선……

○강병원 위원 상한에 대해서는 없이 가는 게 맞겠다.

○임이자 위원 상한제 폐지?

○소위원장 한정애 자, 잠시만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상한에 대해서 없이 가되 하태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이거는 좀 우리가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1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시행된 것이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 이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 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동의를 하되 우리 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상한선이 100억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간을 한계를 두고 강 위원님 것을 이어서 가자 이런 뜻이지요, 지금?

○소위원장 한정애 아닙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단서조항으로 붙어 있는 과정금의 총합이 100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태경 간사님은 1000억 원으로 할 것인지, 500억으로 할 것인지 이 얘기를 하나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또 있고요.

또 하나 제안해 주시는 게 뭐였느냐 하면 그렇게 총합의 상한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없앨 것이 아니라 지금 100억 원으로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일정 기간 동안 그 상한이 유지되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그 단서조항이 사라지게끔 하는 부칙 조항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조금 정리되면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문진국 위원 두 분이 우선 합의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간을 몇 년을 두실 건지……

○강병원 위원 잠깐 정회할까요?

○임이자 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河泰慶 위원 잠깐만,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경과기간을 둘 때 합리적인 경과기관을 한 몇 년 정도 두는 게 일반 법 감정에 맞는지……

○조원진 위원 잠깐만, 지금 100억을 할 때 지난번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과정 좀 설명해 드렸어요, 왜 100억을 했는지?

○임이자 위원 10억에서 100억 갈 때?

○소위원장 한정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난 19대 때의 상황을.

○조원진 위원 그래서 이 과정이 있거든요, 왜 100억을 했는지.

○河泰慶 위원 조 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조원진 위원 제가 환노위에 없었고……

○소위원장 한정애 아닙니다. 조 위원님은 환노위에 안 계셨고 당시 이석현 의원님께서 긴급하게 발의를 한 내용이고……

○조원진 위원 제가 원내 아마 뭐 할 때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다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게 아마 이 기준을 정하는 상황에서 100억을 해서 올 7월부터 실시하자 이건데 이 100억 정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100억을 정했는데……

○소위원장 한정애 논란은 없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제 한계가 배기가스 이런 게 들통 나니까 100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속기록 있어요, 100억 할 때의 속기록?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속기록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시는 했습니다마는……

○조원진 위원 속기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용득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이것 좀 정리하시지요.

○조원진 위원 나만 하면 왜 자꾸 정회를 하려고……

(웃음소리)

○임이자 위원 잠깐 정회하시자고요.

○소위원장 한정애 아니, 지금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1차 회의 때 이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다 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잠깐 정회하는 동안, 10분 동안 경과시간을 얼마를 들 것인지는 두 분 위원님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속기록 하나 준비를 해 주셔서 지난 19대 국회 말에 100억 원으로 결정한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우리 조원진 위원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예, 이용득 위원님.

○이용득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환노위에서 배기가스 과징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언론이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맞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하태경 위원님의 의견과 강병원 위원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정부에서 이 부과현황 참고자료, 강병원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한번 봐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내 차는 거의 없지 않느냐, 전부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국내법의 허술함을 보고 또 우리 시장이 자꾸 커 가는데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고 들어오고 있다 하는 데서 저는 국민들과 언론에 우리 지금 환노위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답이다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5%는 합의가 됐고 상한선 문제의 얘기라고 그러면 좀 절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한선 폐지는 맞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태경 위원도 상한선 폐지는 맞다, 그런데 일정기간을 두자고 하니깐 한 2, 3년 정도라도 이렇게 기간을 뒤서 폐지하면 지금 국내 차종 보호 부분도 되고 국민들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회 때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좀 두 분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제가 마무리 짧게……

○소위원장 한정애 예, 문진국 위원님.

문진국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지금 우리 환노위가 참 제가 늘상 얘기하는, 여기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참 협치가 잘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오늘 우리 하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하는 것을 딱 들어봤을 때 이 과징금에서 퍼센티지로 하고 그런다면 얼른 들었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

이 여기에 타격을 받지 않나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참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매기는 게 딱 두 가지, 5%나 이런 부분에서 또 100억을 상향해서 날짜를 두고 할 거냐 지금 그런 부분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뜻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도 하셔야 되고 아까 여기 정부가 준표를 보면 국내 차는 사실 없어요, 보니까. 다 외제차가 주로 있다는 것을 보고요. 하여튼 정회를 한 10분 해서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님, 잠깐 설명을 하나만 드리고 아까……

○소위원장 한정애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이용득 위원 아니,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나는 정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 강병원 위원님하고 이용득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외국의 회사들이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경각심을 주고 우리 법체계를 제대로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시는데 아까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면 외국 차 회사들은 사실상 상한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그러니까 상한선으로 보호받는 것은 외국의 차는 전혀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상한선은 주로 많이 팔린 국내차의 제작업체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河泰慶 위원 왜 그런데 국내차는, 그러니까 기존의 인식은 다국적 기업이 조금 더 양심적이고 국내차는 좀 덜 양심적이고 이런 인식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완전히 다른데,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게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보다는 주로 한국 현지법인에서 인증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사보다는……

○조원진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법이라는 것은 양국이 상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차 혹은 독일 차에 대해 가지고 과징금 상한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수출이 그쪽보다 거의 한 10배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 차들이 그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국내만 생각하면 저 차들 막 때려서 좋은데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적용을 우리한테 할 것이다 이거야, 우리 수출 차들한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익에 어느 게 이익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이용득 위원 아, 이것은 차이를 두자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한정애 자, 위원님들……

○임이자 위원 제가 마지막……

○조원진 위원 그 부분을 잘 판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그때 생각해…… 이게 법 적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차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한선을 풀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저쪽에서 우리 수출차한테 그렇게 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이게 WTO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까지 하고 정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외국차든 국내차든 간에 대한민국 와 가지고 배출가스 뽑아 대서 오염시키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배출가스를 위조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염을, 더럽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 행위를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조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견학을 가서 현대차 관계자한테 이 부분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폭스바겐 문제가 대두돼서 혹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갔을 경우에 현대차나 기아차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지요.

○문진국 위원 하여튼 정회 좀 하세요.

○소위원장 한정애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는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유인물 법안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신상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 지금 현재는 소득 향상이라든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검토보고 안대로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9대 때도 한 번 발의되었다가 그닥 실익이 없다는 내용하에 폐기되었던 법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11시07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신용현·이용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항과 6항 법안에 좀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환경기준 설정 시에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환경기준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 의미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비추어볼 때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국내 환경여건을 고려할 때 이 수준에 맞추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냥 WTO 기준과 재량규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개정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준이 7쪽 아래 표를 보시면 잠정목표2 수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기준에 맞추기에는 좀 사실상 어렵고 현재는 잠정목표2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이용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인데, 지금 보통 정부가 법정계획 수립하게 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있고 중요한 사항에서는 국회가 언제든지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의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에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지난 4차 종합계획 수립 시에 3차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서 이를 포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포함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쪽의 부칙(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신용현 의원님 안은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그리

고 이용득 의원님 안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대로 될 경우에 정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이용득 의원님 안은 개정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린 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의원이 제안해 주신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개정안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5%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임이자 위원님께서 이미 발의해 주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신용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유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이나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법상에다가 세계국제기구 이런 것을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별도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기존 안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환경종합계획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전 종합계획 평가하는 부분은 수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이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13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 수가 10명인데 15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에서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 수를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게 영상의학이라든지 병리학 분야 전문의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봐서 이 분야 위원 수를 1명 이상씩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15명으로 늘리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쪽의 요양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법에 유효기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별도로 지급기간이라는 규정을 쓰게 되면 오히려 혼동만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쪽의 장의비와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는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에게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석면질병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다른 질병으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이지만 사고사라든지 자살 등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장의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문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5쪽의 기타사항으로 ‘석면피해신고센

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사항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석면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석면피해 조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효력을 상실한 타법 준용규정 등은 삭제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 수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검토보고안을 수용하고요.

다음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양급여 등 지급기간 부분은 검토보고안대로 지급기간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의비, 특별조위금 등의 지급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자살 같은 경우에는 석면피해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인과관계는 좀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자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석면피해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걸로 인해서 자살을 할 경우에는 이것도 석면피해 아니냐는 애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사고사 또는 자살 등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피해조사판정위원회에서 석면과 관련된 자살이라고 규정이 되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구체적으로 ‘자살’이라고는 명시를 하지 않고요.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다른 사고사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문진국 위원** 단서조항 다시 한 번 설명해 주

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단서조항이 22쪽 수정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11시19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법 중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정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육수업 등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운동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초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교육부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정해서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고 또 운동장은 교육부가 관리한다고 하게 되면 일관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 이 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외에 미술학원, 음악

학원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서는 33쪽 아래쪽에 보면 법률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 교실과 학교 도서관 등만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정하고 있어서 당초 법률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한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입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이 개정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관계부처 간의 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후에 환경보건법에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이신 조경규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들어온 배경 자체가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개정안인데 실제 이 법률에 따르면 소관부처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관련한 법도 좀 제각각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든지 기준을 밀로 세울 건지에 대한 원칙이 불분명하다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이번에는 우레탄 문제에서 발생한 거지만 실은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서는 고무 소재를 활용해서 바닥재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실내공간에 대한 중금속 검출 여부는 확인을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재나 기구들을 검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고 예컨대 어린이활용시설 같은 경우에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을 관할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라서 놀이터, 대규모 점포, 유치원, 특수학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이렇게 관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우레탄이 검출됐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넣는다 할 때 저는 전반적으로 이 체계를 얼마나 올바르게 기준을 세워서 보고 있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서 불수용한다라고 하는 이 접근을 좀 더 넘어서서 지금 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환경유해성분에 대한 검출이나 관리, 이런 측면을 어떻게 부처 간 연계해서 관리할 건지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문제가 중급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서 검토하면 된다 이리 기보다는 지금 고무재 문제도 있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도 있고 이러니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당시에 조경규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부처마다 다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은 누가 정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국조실에서도 관계부처 TF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단 한 번에 그치지를 못하고 있어서 협의 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령들을 다시 한번 죽 통합해서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지금 사각지대로 있는 문제들은 무엇무엇이 있으며 그걸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관할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내놓은 다음에 개정안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일단 이 법률 개정안 범위를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논의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의하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추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게 우레탄트랙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현재처럼 학교 그다음에 체육시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있는 놀이터시설 이런 부분들을 각각 부처별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게 바람직하나 하는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관리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각 부처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든 아니면 국가기술표준원이든 이 쪽에서 기준을 정해 주고 그에 따라서 관계부처에서 관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그런 방식으로 합동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리주체들은 그대로 두되 거기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들은 기술표준원과 환경부가 합의해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거고요. 이걸 지금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가 실제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뿐만 아니고 운동장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법 개정안도 그쪽에서 또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불수용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이 법안도 2014년에 이미 한번 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를 거쳐서 올라갔었는데요. 규제위에서 이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2014년이면 한 2년 전이고 그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상황이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가 기준을 정해서 주고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

(11시30분)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여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6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그리고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유발시설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피해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찬성하는 입장과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위배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기대한 소송 남발 우려 그리고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검토보고한 것처럼 아직은 찬반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피해, 가습기 피해와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환경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환경부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10배가 아니라 3배로 하더라도 요건에서 대개 미국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보통 고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의적인 것, 가습기살균제처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도 은폐한 것, 이렇게 국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

장적으로 입법을 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이자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 구제법의 범 취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핵심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가해자와 원인이 명확한 사고와 달리 잘 보이지도 않고 서서히 드러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가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에 놓였을 때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그 잘못을 저지른 원인 제공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엄청 크게 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의 취지는 피해구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가중처벌이나 징벌적 배상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할 때는 범죄에 따른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진국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한정애 문 위원님.

○문진국 위원 정부안에 동의를 하고요. 환경오염사고 피해에 관련되어서 법원에서 판결 난 것이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환경오염사고요?

○문진국 위원 예.

○환경부차관 이정섭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많이 있어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법이 그런 판례들을 수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소위원장 한정애 해당 법이 제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아직 안착하는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1시34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생물의 방사·식재 금지 및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생물을 자연환경에 방사 또는 식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취지는 타당한데 이미 현행법에서 생태계교란생물의 방사·식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해우려종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 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검토보고 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정부안 나오면 병합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알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1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11시36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경대수·주승용·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5쪽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 ‘계획이 생태계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계획으로 인근지역에 수질오염 등 직접적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관계전문가 및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7쪽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환경영향평가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재평가는 정부 예산을 통해서 환경부가 직접 하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책임이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재평가하는 것보다는 제40조제3항의 조치명령을 통해서 사업자가 직접 재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개정안은 2016년 11월 7일 제출된 정부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50쪽에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하도급 관련해서 발주청 승인절차 도입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도 11월 7일 제출된 정부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첫 번째, 의견수렴 관련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안대로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견이고요.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안대로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향후 정부안과 병합심사를

위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12시까지 죽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11시39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5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학대행위 유형에 개정안은 ‘덧, 창애, 울무 등을 사용하여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학대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학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덧, 창애, 울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으나 현행법으로도 덧, 창애, 울무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개정안과 같이 제70조제1항을 삭제해 버리면 오히려 일반적인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61쪽의 벌금형 하한을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좌측의 개정안 표를 참조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유해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덧에 멸종위기종이 걸려 폐사한 경우’ 등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도 처벌이 불가피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4쪽에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상습위반자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부과되고 있고 법원이 하한선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자체가 부과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행위 유형 추가하고 벌칙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불수용하는 검토보고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벌금형 하한의 인상 및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보고 안대로 개정안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하한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보고 안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이것도 병합심사가 필요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주로 어떤…… 실태가 어떻습니까, 간단히? 어떤 야생동물이 학대를 많이 당하지요?

○이상돈 위원 곰의 쓸개 그런 것 있잖아요, 가 뒤 놓고 쓸개 빼고.

○河泰慶 위원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있나 보지요?

○이상돈 위원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병원 위원 국감 때도 한번 한정애 위원님께서……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한정애 예.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8조에 현재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리거나 산 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든가, 야생동물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河泰慶 위원 때리거나 산 채로 죽인다고요?

○강병원 위원 태워서……

○河泰慶 위원 아, 태워서.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예, 태워서 죽이거나 그다음에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이라든가 일부를 채취하거나,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

용하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창애는 됩니까? 창입니까, 창?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밑에 함정을 파가지고 창이 있으면 찢려서 죽거나 하는……

○**河泰慶 위원**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문진국 위원** 지금 이것이 벌을 강하게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예.

○**문진국 위원**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야생동물이 막 시내에도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니 이런 것들이. 그것이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농가에서 밭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농가를 망가뜨려서 밭을 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 법에 걸리는 동물이 거기에 걸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을 정말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그것도 과학계 벌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지금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밭을 놓거나 이런 행위로 해서 야생동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이 오지 않도록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죽이거나 이것이 아닌 피하게 하는 방법을 쓰라는 것이지 그것이 와서 죽을 수 있는 밭이나 전기철망 이런 것으로 해서 야생동물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에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런 취지에서?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문진국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대부분 그런 것을 생각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우선 자기 것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민가나 농가나 이쪽으로 침해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유해생물포획을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불법적인 도구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문진국 위원** 안 된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안 됩니다.

○**문진국 위원** 고의성이 아닌데도?

○**환경부차관 이정섭** 의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이상돈 위원** 고의가 있다고 봐야지요. 야생동물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지요.

○**문진국 위원** 그것도 고의로 봐야 되나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소위원장 한정애** 대체적으로 동물보호 차원에서 잔인하게 학대를 해서 죽이거나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중에는 그 뜻은 좋지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삭제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11시48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6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에서 이미 공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정안이 벌칙 수준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취사행위 그리고 오물 투기 등 공원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생물의 방사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1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면 개정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3쪽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흡연행위 등 관련된 과태료 상향조정에 대해서 첫 번째,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한 대로 오히려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주차행위 등 과태료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제가 참 궁금해서……

○소위원장 한정애 하태경 위원님.

○河泰慶 위원 국회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과태료를 물면 얼마나 한다고요?

○송옥주 위원 10만 원이에요.

○河泰慶 위원 10만 원, 그것을 좀 올리는 법안을……

(웃음소리)

○송옥주 위원 회의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20만 원으로 올릴까요?

○河泰慶 위원 그것을 올리지요, 좀.

○소위원장 한정애 그것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법까지 한번 해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 보겠습니다.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

(11시51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6만㎡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옥내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척,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 28일부터 6만㎡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검사·세척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시행성과를 보고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78쪽의 급수관세척업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신고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확한 방법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 등 처벌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급수관세척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 그리고 급수관세척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정섭 첫 번째, 의무대상 범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드린 대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시행성과 분석 후에 다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수관세척업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한 업종이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또 급수관세척업을 다시 두는 것은 너무 칸막이가 많다는 거고,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거 도입하는 필요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수조청소업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개정안을 불수용하고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저수조……

○환경부차관 이정섭 저수조청소업입니다, 물탱크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특별히 이렇게 신고업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휴업 절차, 폐쇄 절차 이런 것

을 규정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 급수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급수관에 대한 세척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수도물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알겠습니다. 수도법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소위원회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한정애**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8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이상 신고된 배출가스 과다 차량에 대한 무료검사 의무화 관련 조항인데요. 현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이 신고 되면 신고된 차량 소유주에게 무료검사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3회 이상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금 신고된 차량의 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위반 여부는 검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료검사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또 신고제도 악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무료검사는 현재 법 61조에 따른 수시점검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률에 무료검

사를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6쪽의 시행일 관련해서는 그 개정 사항에 따라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검토보고 안, 즉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법률안은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4시30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경유차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모든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교체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교체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까지 모두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현재 또 경유 외에 다른 마땅한 연료가 없는 상황에서 화물차 등 특수 차량은 교체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개정안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개정안을 불수용하는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종류가 좀 다른 화물차나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기는 하네요.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렇지요. 이게 또 남의 개인 재산인데 나중에 같이 다루는 게 나올 거 같아요.

○소위원장 한정애 우리가 자동차 업계의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을 촉구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57인 발의)

(14시32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9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내용은 첫째, 미세먼지 배출 원인 진단 및 저감 방안 도출과 그리고 에너지·전력 관련 계획에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 도로 미세먼지 제거 등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그리고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정부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측정장비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 대책에 포함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대책 등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사항 등을 감안할 때 결의안 취지는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좌측의 5호,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촉구 사항이라든지 제6호,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 등의 내용은 2015년 4월에 의결한 결의안과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100쪽에 보면 결의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결의안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통계정보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정부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 경유

차, 발전소 등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2쪽의 네 번째 사항은 ‘단순히’를 ‘현재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조문을 정리했고요.

다섯 번째 사항하고 여섯 번째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검토보고 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河泰慶 위원 제가 질문……

그러면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그전에 두 번, 13년 12월하고 15년 4월하고 통과가 됐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 일부를 한다는 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사항은 이전 것하고 사실상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다만 저는 이 결의안을 환경노동위원회가 전혀, 이게 어쨌든 타 상임위에 계신 분이 제안을 해서 저희 위원회로 온 것인데요. 저희 위원회가 이 결의안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들을 고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와 관련된 대안이나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노위의 그런 노력에 비해서 산업위에서 산업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화력발전소가 왜 좀 더 빨리 배출저감장치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 하지 않느냐 하는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뭘 안 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러려고 소위 이것을 하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河泰慶 위원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보고 잘하라고 우리 위원회에 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무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뭘 하도록 일단 해당 상임위를 거치고 전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조금 공감들을……

(「동의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오히려 해당 산업위나 또는 국토위에서 적극적으로 이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에, 저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촉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37분)

○소위원장 한정애 자, 이제 대기환경보전법……

○송옥주 위원 아니, 104쪽 안 해도 돼요?

○소위원장 한정애 기상은 기상청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바뀌어서, 일단 환경부 것을 끝내야 하니까……

○송옥주 위원 예.

○河泰慶 위원 아까 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강병원 의원 법안에 대해서.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님들 합의해서……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되면 정부는 받을 것입니다.

○河泰慶 위원 아, 받을 거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河泰慶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한 게 3년 경과이고 강 의원은 즉시지요, 법안 통과 즉시?

○문진국 위원 예, 즉시.

○강병원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조원진 위원님도 좀 그 안에……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것은 법안 통과되는 즉시잖아요?

○강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즉시와 3년의 중간 정도로 하시지요.

○문진국 위원 1년으로 하시요.

○소위원장 한정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국 공포 작업을 거치려고 하면 국무회의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년 1월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문진국 위원 1년은 걸릴 거예요.

○소위원장 한정애 이렇게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이든 이렇게 해도 실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河泰慶 위원 공포 후 1년 하면 제가 절반 양보한 거예요.

(웃음소리)

○강병원 위원 좋습니다.

딱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공포 후 1년, 부칙 조항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매출액의 5% 상한을……

○강병원 위원 차종당 500억, 1년 후부터.

○소위원장 한정애 500억 이렇게 하는 것으로……

○문진국 위원 그렇게 정리했어요, 1년 기간으로.

○소위원장 한정애 알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박수라도 한 번 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한정애 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환경부 식구들 고생하셨는데 환경부 법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상청만 남았으니까 인사들 하시고……

다만 위원님들 기억을 해 보시면, 조금 기억을 더듬으시면 저희가 그저께 1차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는 했었던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합의는 다 되어 있고요, 심사가 완료된 가운데 지금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위에서 법안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서, 혹시 거기에서 합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류가 되어 있어서 혹시 이번 주 내에 내일까지라도 국토위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월요일 날 있는 전체회의하기 전에 법안소위를 잠시 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만 잠깐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14시41분)

○소위원장 한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104쪽의 기상산업진흥법인데요.

105쪽, 이것은 지금 현재 기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에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신고제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또 사업자의 신고 부담이 있어서 이 양 측면을 같이 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108쪽에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확대하고 업무 범위도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화산·해일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고, 다만 112쪽에 보면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너무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봐서 문구를 좀 조정해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사항 관련해서 지금 결격사유 발생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에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2년간 기상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 경과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상은 폐업해서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 기상청장이 사업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유가 아니고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차장 남재철 기상산업 육성 차원에서 장석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관을 먼저 통합하고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오는 상황입니다. 즉 지적이 있어서 결국은 법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19대 때도 19대 말씀에 이 법이 처리됐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노위 상황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河泰慶 위원 기상산업기술원 말이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예, 기상산업기술원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이것은 기상산업기술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산하기관이 당연히 한국에 있는데 왜 다 ‘한국’자를 앞에 붙이지요? 기본적으로 다 한국에 있는 기관들이는데 전부 ‘한국’, 그렇다고 영국기상산업연구원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한테 그냥 ‘기상산업연구원’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영문으로 표기할 때, 외국에 나갈 때는 앞에 ‘코리아’를 붙이는 것이 맞을 수는 있는데……

○**임이자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한정애** 외국으로 나갈 때 영문 표기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표기할 때 전부 ‘한국’자를 붙이는 게, 외국 기관들의 명칭을 죽 보시면 해당 국가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전혀 드뭅니다.

○**기상청차장 남재철** 아마 민간기관하고 공공기관하고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이것도 제가 보기에 약간 공공기관의 뉘랄까요, 그런 의식 같은 게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기술개발원, APEC 기후센터 3개가 통합되는 거예요?

○**기상청차장 남재철** 아닙니다.

2015년도에 R&D를 담당하고 있는 기상기술개발원이 기상산업진흥원에 이미 통합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그 뒷장에, 109페이지를 보면 경위서를 냈고요. APEC 기후센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APEC 기후센터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합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리고 113쪽, 기상사업자 결격사유 발생 시 2년간 사업할 수 없는 것을 1년으로 완화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물론 기상청과는 다르지만 노동부에서 노무사가 노무사법을 위반해서 부정할 일을 저질러서 취소되었는데 바로 또 노무사로 등록해 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 제어가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늘려야 된다고 노동부 쪽으로는 그런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년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1년으로 완화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취소당하고 법적 다툼을 하다 보면 사실 1년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법적인 소송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냥 등록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까지 완화를 하실 필요가 있는가요?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장 유상진** 기상서비스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헌법상의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타 법도 2년에서 1년 정도로 완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저희가

타 법을 조사했을 때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1년 정도로 돼 있어서 장석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저희 쪽에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기상예보사의 결격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장 유상진** 그 사항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도.

○**임이자 위원** 그래서 기상예보사 같은 경우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수공을 해요. 침해의 최소성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윗부분의 기상사업자 관련돼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물론 전문위원님도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지금 기상청에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었던 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저러 해서 그런 데가 취소되었는데 법적 다툼 하다 보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도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등록 취소를 했을 때. 그러면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어찌 보면 사실은 또 바로 다시 등록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법제처가 권고를 한 것은 맞으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악의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 기상사업자는 많은 수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너무 완화를 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河泰慶 위원** 궁금한 게 기상사업자하고 기상예보사하고 다른 거예요?

○**기상청차장 남재철** 기상사업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상예보사는 자격증 개념입니다. 기상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예보사나 기상기사나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 몇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河泰慶 위원** 예보사는 사람이고 사업자는 회사고 이렇게……

○**기상청차장 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아무튼 저는 소수의견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112쪽의 비고란 잠깐 봐 주십시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상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크게 문제가 안 되시면……

○전문위원 김양건 이 부분은 기상청하고도 협의의 했고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한정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됐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기로 하고 심사하기로 했던 법안들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 병 원	문 진 국	송 옥 주	신 보 라
이 상 돈	이 용 득	임 이 자	조 원 진
하 태 경	한 정 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손	충	덕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	관	이	정
기	획	이	운
자	연	박	천
보	전		규
국	장		

기 후 대 기 정 책 관	나	정	균
상 하 수 도 정 책 관	오	종	극
환 경 정 책 관	박	광	석
환 경 보 건 정 책 관	이	호	중
기 상 청			
차	장	남	재
기	획	이	우
조	정		
관			철
			진